정 관

아이에스동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 2

제 2 장 주 식 …… 4

제 3 장 사 채 …… 10

제 4 장 주주총회 …… 11

제 5 장 이사•이사회 …… 13

제 6 장 계 산 …… 16

부 칙 …… 18

정 관

1975. 09. 01 제정
1985. 05. 28 개정
1986. 02. 28 개정
1987. 03. 02 개정
1988. 02. 28 개정
1990. 02. 28 개정
1991. 02. 28 개정
1993. 02. 26 개정
1994. 02. 26 개정
2004. 07. 01 개정
1995. 02. 28 개정
1996. 02. 29 개정
1997. 02. 28 개정
1998. 03. 28 개정
1999. 02. 27 개정
2000. 03. 17 개정
2001. 03. 09 개정
2004. 11. 04 개정
2005. 03. 05 개정
2008. 04. 25 개정
2008. 06. 13 개정
2009. 03. 20 개정
2010. 03. 26 개정
2015. 03. 20 개정
2016. 03. 18 개정
2018. 03. 30 개정
2019. 03. 29 개정
2021. 03. 26 개정
2022. 03. 25 개정
2023. 03. 31 개정
2025. 03. 27 개정
2026. 03. 2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IS DONGSEO CO., LTD.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요업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기타 건자재 제조 및 판매업
4. 도매업
5.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6. 수출입업
7. 광산개발 생산 및 판매업
8.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업
9. 주택사업
10. 기계 구조용 세라믹 담체 제조 및 판매업
11. 전기, 전자용 세라믹 담체 제조 및 판매업
12. 서비스업(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13. 중기 대여업
14.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동 관련제품 제조 판매업
15. 전자파 흡수체 관련 시설업 및 동 제품제조 판매업
16. 촉매관련제품의 제조판매 및 관련사업
17. 수전금구제품 제조 및 판매업
18.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 시설업 및 동 관련 제품 제조 판매업
19. 소방 시설 공사업
20. 조립식 욕실(C.U.B.R)제품제조 및 판매업
21. 토공사업
22.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3.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4. 건축물 조립공사업
25.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26. 각종차량 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27. 통신기계기구의 제조 판매업
28. 인터넷관련 정보통신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31. 건물 및 주택건설사업
32. 택지조성업 및 공급업
33. 임산업

34. 육영사업
35. 토목건축공사업
36. 전기공사업
37. 포장공사업
38.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9.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0. 전문소방시설공사업
41. 정보통신공사업
42.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43. 시설물 유지 공사업
44. 고철, 비철금속, 금속, 광물, 귀금속 등 관련 무역 중개 및 판매업
45. 부동산개발업
46. 철광업 및 비철금속광업
47. 기타광업 및 채석업
48. 운수관련대리서비스업
49.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 판매업
50. 전자, 전기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 판매업
51.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52. 가구 제조 및 판매업
53. 요업제품 및 전자제품 등 소매업
54. 갑류/을류 무역 대리업무
55. 욕실제품 및 가전제품 제조, 판매업
56. A/S 콜센터
57.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9. 농,수,축산물 생산·가공·판매업
60. 농,수,축산물 저장보관업
61. 음·식료품 제조·가공·판매업
62. 각종 천연,가공식품 및 원료 제조·가공·판매업
63.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유통업
64. 벤처사업 발굴, 운영 및 투자 및 육성사업
65. 신재생에너지 생산, 판매업 (2022.03.25. 65호 이하 69호 신설)
66. 신재생에너지 건설 및 투자업
67.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지, 관리, 운영사업
68. 풍력발전사업
69.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화합물의 개발, 제조, 가공 및 판매업
70.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화합물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71. 재생용 금속 가공 원료 생산업
72. 비철금속 수출 및 판매업

73.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4. 인쇄 및 인쇄관련 사업
75. 콘도미니엄 운영업
76. 골프장 설치운영 및 기타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개발사업
77. 관광 레저사업
78. 종합휴양업
79. 관광사업 운영업
80. 관광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업
81. 광고, 홍보 관련사업
82. 일반 음식점업
83. 휴게 음식점업
84. 호텔운영관리업
85. 관광숙박업
86. 호텔분양업
87. 호텔업
88.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89. 요트 임대 및 분양업
90. 요트장 개발업
91. 요트장 운영관리업
92. 보트장경영업
93. 수상레저시설제공업
94. 영화관 상영 및 운영업
95. 각 사업에 관련된 업체투자 및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고양시에 둔다.
<개정 2026.03.26>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sdongse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2015. 3. 20. 개정)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일부개정 2023.03.31>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03.31>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③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한다. <개정 2023.03.31>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하고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일부개정 2023.03.31>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일부개정 2023.03.31>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03.26, 개정 2023.03.31>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개정 2023.03.31>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03.31>

1. <삭제 2023.03.31>
2. <삭제 2023.03.31>
3. <삭제 2023.03.31>
4. <삭제 2023.03.31>
5. <삭제 2023.03.31>
6. <삭제 2023.03.31>

제 7 조의 3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②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3.31>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청구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25.03.27>

가. <삭제 2025.03.27>

나. <삭제 2025.03.27>

다. <삭제 2025.03.27>

⑤ 제3항 제2호의 전환청구기간 또는 제4항의 제2호의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03.31>

제 7 조의 4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②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7조의2 제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3.31>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조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1.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2.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주주가 본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준용한다. 다만 이때, 상환기간은 상환청구기간으로 본다.

⑤ 회사는 주식의 취득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제 8 조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03.29>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단서 삭제 2009.03.20, 개정 2023.03.31>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개정 2023.03.31>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개정 2023.03.31>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개정 2009.03.20>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개정 2009.03.20, 개정 2023.03.31>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개정 2009.03.20, 개정 2023.03.31>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개정 2009.03.20, 개정 2023.03.31>
4.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일부개정 및 삭제 2009.03.20, 개정 2023.03.31>>

5. <삭제 2023.03.31>
6. <삭제 2023.03.31>
7. <삭제 2023.03.31>
8. <삭제 2023.03.31>

③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03.20, 개정 2023.03.31>>

④ 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09.03.20, 개정 2023.03.31>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23.03.31>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23.03.31>

⑦ 회사는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31>

제 9 조의 2 삭제 <2009.03.20>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의 100의 10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3.20, 일부개정 2023.03.31>>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3.20>

1. 삭제 <2009.03.20>
2. 삭제 <2009.03.20>
3. 삭제 <2009.03.20>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09.03.20>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수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 2009.03.20>
   나. 해당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 2009.03.20>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만료일을 해당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①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03.31>

⑧ <삭제 2021.03.26>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의 4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6.03.26>

제 10 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전문개정 2021.03.26>

제 11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03.29>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3.26>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전문개정 2021.03.26>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준일) ① <삭제 2026.03.26>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03.26>

제 14 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오손, 일부 마멸 또는 분합 등으로 인하여 신주권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그 구주권을 첨부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오손 또는 일부 마멸의 정도가 심해서 그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할 때, 또는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제권판정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이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5 조 (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증 또는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26>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금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법인 등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0>

②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1.03.26>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법인 등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03.20>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3.26>

제 18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03.29>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9 조 (소집시간)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때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21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0>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매일경제신문 또는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3.20>

③ 삭제 <2009.03.20>

제 22 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03.26>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신설 2026.03.26>

제 23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0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결의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결의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결의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03.26>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제 30 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3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한다. <일부개정 2026.03.26>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①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26>

제 31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일부개정 2026.03.26>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30>

③ <삭제 2026.03.26>

제 31 조의 2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신설 2026.03.26>

②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6.03.26>

제 32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개정2018.03.30>

제 32 조 2 (이사의 해임)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개정 2018.03.30>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개정2018.03.30>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사망 시

제 33 조 (이사 및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3.30>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4 조 (대표이사 등 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이상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5 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

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6.03.26>

제 36 조 (이사회 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7 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수행한다.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수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②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7 조 2 (의안) ①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 (경영진의 선임과 급여)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② 경영진의 선임과 급여는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그 이사가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25.03.27>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2025.03.27>

③ <삭제 2025.03.27>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30>

제 40 조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1호 이하 2호 신설 201.03.30>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일부개정 2026.03.26>
3. ESG위원회 <2022. 03. 25. 3호 이하 4호 신설>
4. 경영위원회

② 이사회 내 이사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40 조 3 (감사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03.30>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6.03.26>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2. 03. 25.신설>

④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6.03.26>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26>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⑤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신설 2026.03.26>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6.03.26>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신설 2026.03.26>

⑨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26>

제 40 조 4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03.26>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6.03.26>

제 40 조 5 (ESG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ESG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22. 03. 25. 신설>

② ESG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2. 03. 25. 신설>

제 40 조 6 (경영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40조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22. 03. 25. 신설>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022. 03. 25. 신설>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 2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 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03.30>

②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해당이사 또는 감사의 악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3.30>

제 41 조의 3 (독립이사의 자격) ①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은 상실한다. <일부개정 2026.03.26>

제 42 조 (상담역 및 고문)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3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의 작성 •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30>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손익잉여금처분명세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위원회는 제①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30>

③ 대표이사는 제①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 지사, 출장소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①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처분액

제 45 조의 2 <삭제 2026.03.26>

제 46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03.26>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03.26>

제 46 조의 2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3.26>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26>

제 47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①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정관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또는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2,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의 2,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6조의 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 개정의 시행) 이 정관은 199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의 제①항 사외이사의 수는 1998년도에 한하여 1인만 둔다.

제 2 조 (이사의 시차임기제) ①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이사 수를 정한다.

② 제32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1그룹에 속한 이사는 다음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2그룹에 속한 이사는 두 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3그룹에 속한 이사는 세 번째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가진다.

제 3 조 (본 개정 정관 시행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신분) 본 개정 정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 중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와 감사는 본 개정 정관에 의하여 상근이사와 상근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를 계속한다.

제 4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5 조 (내규)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정관 개정의 시행) 이 정관 개정은 제24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사의 시차임기제) ①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이사 수를 정한다.

② 제32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제1그룹에 속한 이사는 다음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제2그룹에 속한 이사는 두 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제3그룹에 속한 이사는 세 번째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가진다.

제 3 조 (준용규칙)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4 조 (내규)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 개정은 제2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 개정은 제26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제9조의3 및 제45조의2는 증권거래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 개정은 제30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8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1조의2,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항, 제40조의3 제8항 내지 제9항, 제40조의4, 제41조의3에서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항 집중투표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3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